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 · 증여세

2019. 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머 리 말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지원하고자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 금액을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분 유지의무 예외사유에 지분감소가 없는 무상감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을 재분류 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하여 유망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지원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세법에 규정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노정호

Contents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6
2. 상속세 과세제도	7
3. 증여세 과세제도	10
4. 세액의 계산	12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3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15

참고

-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상속공제액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기본세율)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특례세율)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I. 가업상속공제 제도

1.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22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25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35
4.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35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1

Contents

II.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43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45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47
4.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49

III.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1. 연부연납 제도란	51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51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52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53
5. 납세담보의 제공	54
6. 연부연납의 취소	55
7.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56
8. 연부연납 가산금	58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 |
|--|----|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60 |
|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63 |
|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64 |
|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66 |
|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 68 |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 | |
|---------------------|----|
|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 69 |
| 2. 주식 등 할증평가 | 69 |
|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72 |

참고자료

- 관련 서식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435, 1999.3.2.).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 2019.1.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7.31.임

-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정 상속 순위 (민법 §1000 · §1003)]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참고 [법정 상속분 예시(민법 §1009)]

구 분	상 속 인	민법상 법정상속분	
		상 속 분	배 분 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차 남 1 차 녀 1 배우자 1.5	2 / 11 2 / 11 2 / 11 2 / 11 3 / 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상속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음.

4)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1)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성립합니다.

참고 [증여재산별 증여시기]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그 밖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일 2019.2.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9.5.31.임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음.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4

세액의 계산

-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채무 등(공과금+장례비+채무)+사전증여재산-각종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참고 [상속세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3)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만 물납가능)

- (요건) ①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 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합니다.
-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 (2017년) 7% → (2018년) 5% → (2019년 이후) 3%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연 9.33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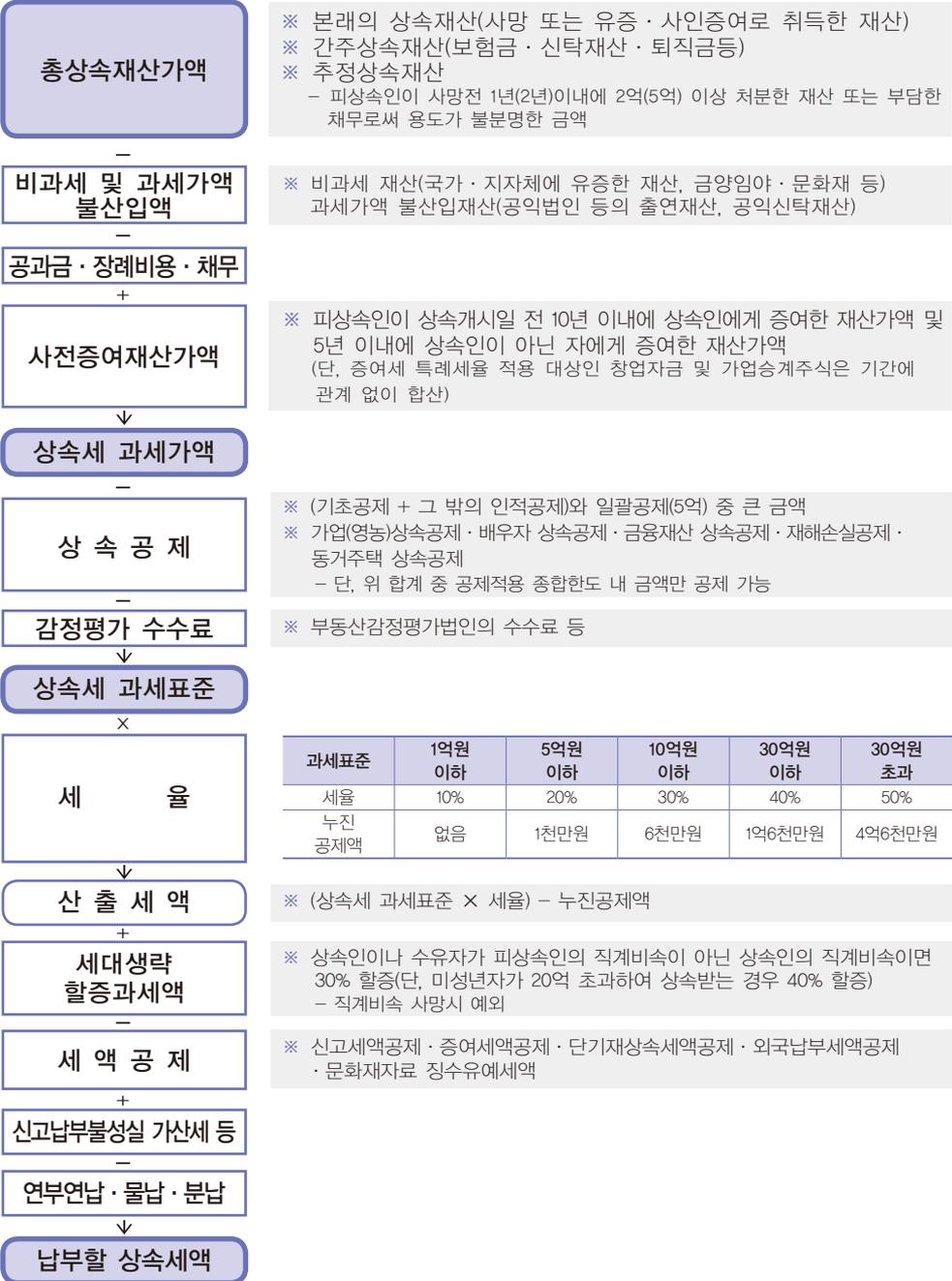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25/10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9.2.11.까지는 3/10,000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당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 없이 합산)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기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총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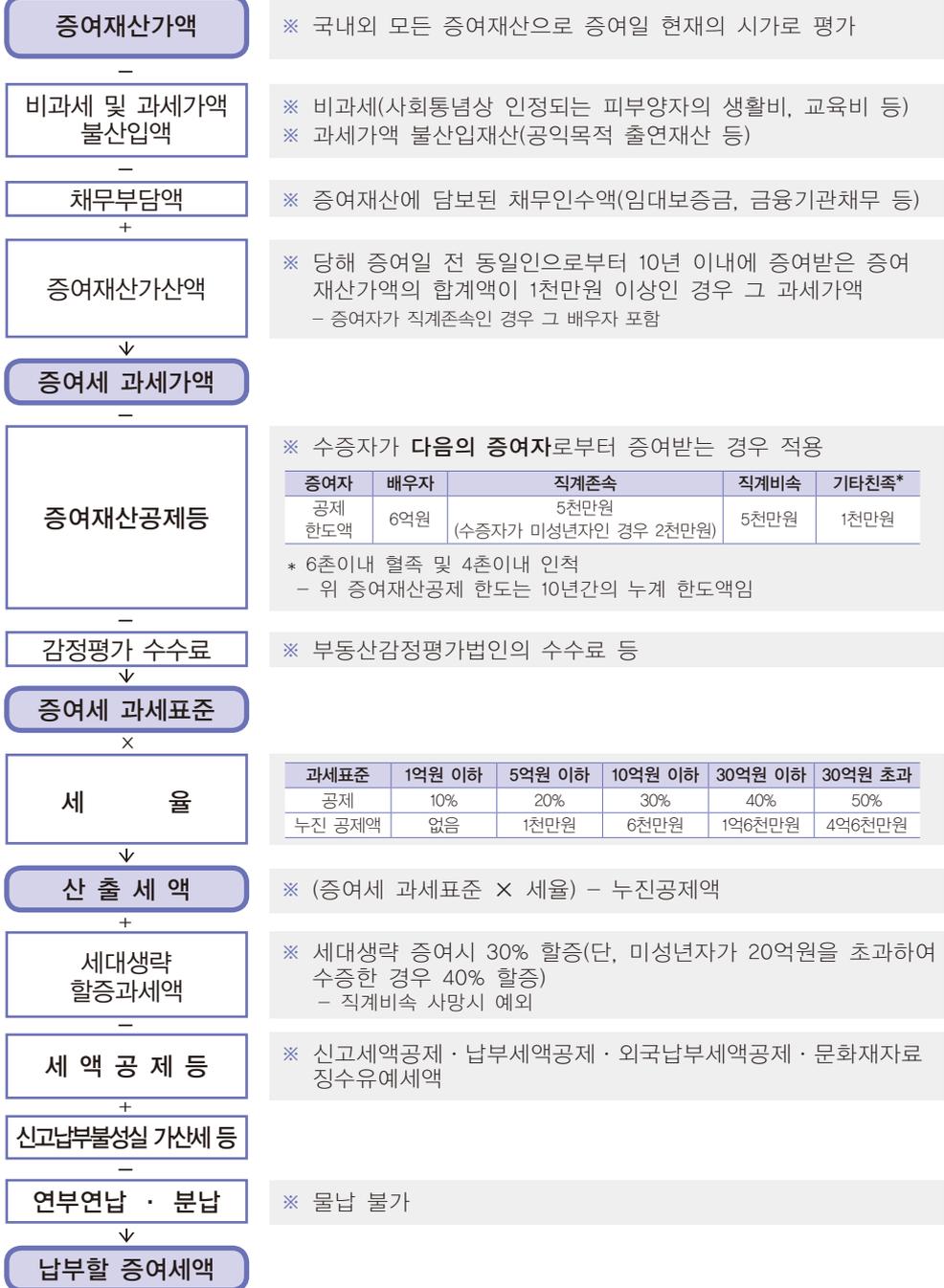
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①~⑦ 합계와 ⑧ 공제적용 종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

공제의 종류	상속공제액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원 ~ 500억원* 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200억, 20년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 15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법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③ 일괄공제 (상증법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공제액 : MAX (㉓, ㉔) ㉓ 5억원 ㉔ (기초공제 2억원 + 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원) 적용
④ 배우자상속공제 (상증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상속공제액 : MAX (㉓, ㉔) ㉓ MIN (㉑, ㉒) 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 - 비과세·채무 등) ㉒ 공제한도액 MIN (i, ii) i)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재산의 과세표준) ii) 30억원 ㉔ 5억원 * ㉓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재산분할기한 경과 후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증법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 2천만원 초과시 : MIN (㉓, ㉔) ㉓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㉔ 2억원 ○ 2천만원 미만시 : 금융재산가액 전액
⑥ 재해손실공제 (상증법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증법 §23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5억원 한도)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상증법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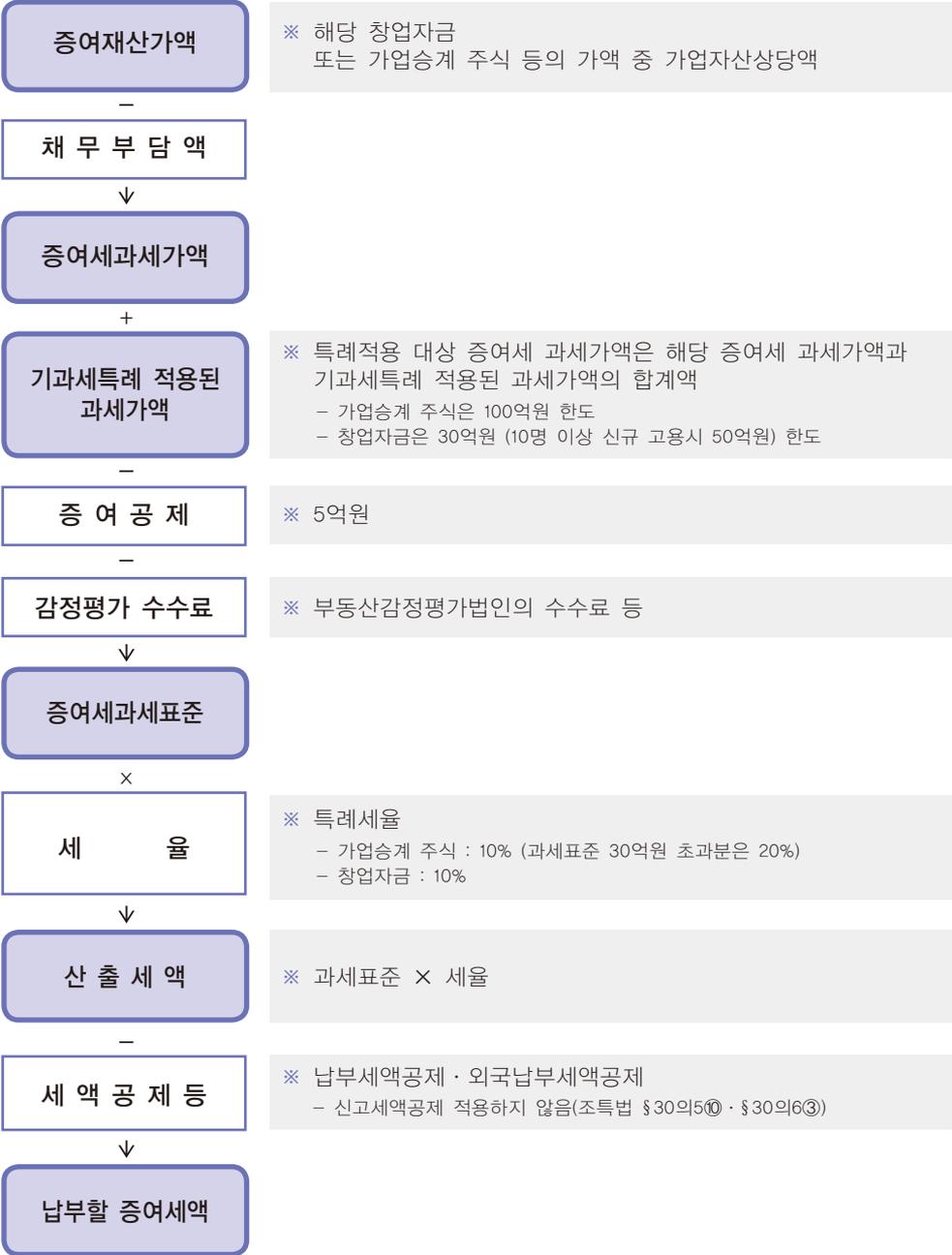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특례세율)

〈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년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구분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업용자산 처분시 추정제도 합리화	공제금액 전액 × 기간별추징율	공제금액 전액 × 자산처분비율* × 기간별추징율 *(상속개시일기준)처분자산의 현재가액/ (상속개시일기준) 가업용자산의 가액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예외사유 추가	〈신 설〉	· 균등 무상감자 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출자전환한 경우
가업상속 후 합병· 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신 설〉	· (합병)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여 가업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 (분할) 분할로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 제조업 전체	· 제조업 전체(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제외)

I.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 ~ 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 자산비율 제외)

-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상종법상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2)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내용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 이전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 이후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 이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60억원 ○ 15년이상 : 80억원 ○ 20년이상 : 100억원
'11.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2.1.1. 이후	상 동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100억원 ○ 15년이상 : 150억원 ○ 20년이상 : 300억원
'13.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4.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 미만 공제 가능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200억원 ○ 15년이상 : 30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16.1.1. 이후	공동상속 허용	상 동	상 동
'18.1.1. 이후	상 동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200억원 ○ 15년이상 : 30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200억원 ○ 20년이상 : 300억원 ○ 30년이상 : 500억원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600억원 이하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600억원	상속 재산가액	6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5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5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	세율	50%(누진공제 4.6억)
292.9억원	산출세액	42.9억원
(8,787억원)	신고세액 공제	(1,287억원)
284.113억원	자진납부 세액	41.613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37.5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사례)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600억원
- 상속인은 자녀 1명이며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 가업상속재산	600억원	600억원	600억원	600억원	600억원	600억원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1억원)	(30억원)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 과세표준	594억원	565억원	495억원	295억원	95억원	95억원	95억원
· 산출세액	292.4억원	277.9억원	242.9억원	142.9억원	42.9억원	42.9억원	42.9억원
⊖ 신고세액공제	(29,24억원)	(27,79억원)	(24,29억원)	(14,29억원)	(4,29억원)	(3,003억원)	(1,287억원)
· 자진납부세액	263.16억원	250.11억원	218.61억원	128.61원	38.61억원	39,897억원	41,613억원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업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②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피상속인	대표이사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연령	18세 이상
상속인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 **가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별표] <신설 2017. 2. 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 (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 (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 (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 개발지원업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②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해석사례]

-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재산-899, 2009.3.13.)
- 2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재산-1253, 2009.6.23.)
-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179, 2014.11.7.)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00522, 2016.05.17.)
-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04.12.)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2) 피상속인 요건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의미)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할 경우로 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것임



[해석사례]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재산-172, 2011.4.1.)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중여-77, 2013.4.26.)
- 법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법규과-842, 2014.08.11.)
-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재부재산-741, 2014.11.14.)

3) 상속인 요건

-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해석사례]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산-712, 2009.4.18.)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산-166, 2010.3.18.)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한 경우는 위 산식에서 ‘자산처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재계산 (‘19.1.1.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기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2.1%) / 365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소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중→소→세→세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세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매출액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는 소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예

소분류(예)		세분류(예)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명
561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및이동음식업, 기타음식점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 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고무제품제조업

소분류(예)		세분류(예)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명
5611	일반 음식점업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몰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10년 후 판단)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⑥)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③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예) 10년 누적 평균은 100% 미달하나, 9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70%(추징율)
 10년 및 9년 누적 평균은 100% 미달하나, 8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80%(추징율)

※ 기간별 추징율

기간	추징율	기간	추징율
7년 미만	100%	8년 이상 9년 미만	80%
7년 이상 8년 미만	9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해석사례]

-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산-51, 2012.2.10.)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 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17.07.20)
-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석사례]

-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재산-140, 2011.3.17.)
- 2개 이상의 가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한도액을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함 (기재부 재산-255, 2014.3.11.)
 - 〈사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100%를 적용한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기업은 50억원 이고, 10년을 영위한 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 ⇒ 30년 영위기간 기업은 한도액이 500억이므로 공제대상금액 50억원을 전액 가업상속 공제하는 것이며, 10년을 영위한 기업은 200억원[=MIN(500억원-50억원, 10년을 영위한 기업의 한도액 2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로 적용 가능함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2340, 2015.12.11.)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시기 계산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⑩)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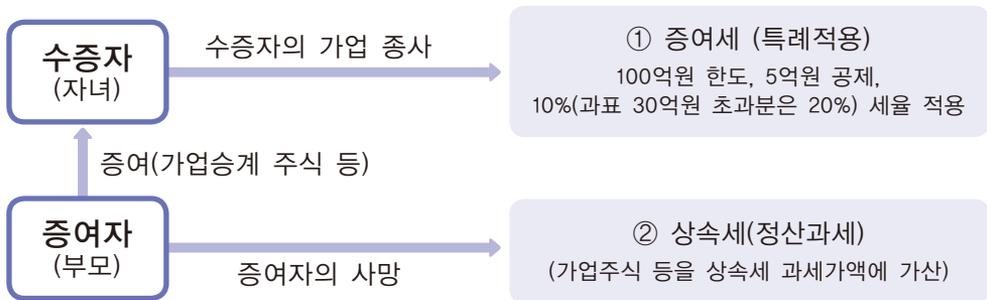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II.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제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증여일	적용가액	적용 한도	사후관리기간
'08.1.1. ~ 14.2.20.	특례대상 증여가액	30억원	10년
'14.2.21. 이후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상 동	상 동
'15.1.1. 이후	상 동	100억원	7년

(사례)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임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5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누진공제 4.6억)	세 율	10%(30억원 초과분은 20%)
30.15억원	산 출 세 액	10억원
(0.9045억원)	신고세액 공제	-
29.2455억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9.2455억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사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5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6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乙)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임

구 분	2014년		2019년	
	특례 적용분	특례 미적용분	특례 적용분	특례 미적용분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30억원	48억원	12억원
⊖ 증여 공제	(5억원)	(0.5억원)	(5억원)	(0.5억원)
· 과세표준	25억원	29.5억원	43억원	11.5억원
· 세율	10%	40% (누진공제 1.6억원)	10% (30억초과분은 20%)	40% (누진공제 1.6억원)
· 산출세액	2.5억원	10.2억원	5.6억원	3억원
⊖ 신고세액 공제	-	(1.02억원)	-	(0.09억원)
· 자진납부세액	2.5억원	9.18억원	5.6억원	2.91억원
· 자진납부세액 계	11.68억원		8.51억원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재산-2081, 2008.8.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음)
- ※ 중소기업 등 : I.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
-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해당 주주 등을 말함



[해석사례]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재산-1556, 2009.7.27.)
-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재산-779, 2009.11.19.)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재부 재산-825, 2011.9.30.)
-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동일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634, 2013.05.31.)

3) 증여 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 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I.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14.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됨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후관리 경과규정) 2014.12.31. 이전에 가업승계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text{※ 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frac{\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25} \times \frac{25}{100,000}$$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1 연부연납 제도란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 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 또는 지방채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 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 신청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2009.11.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기한후 신고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가능('10.2.18. 이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5 납세담보의 제공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6 연부연납의 취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14조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 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에 해당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납부(3년간 거치 가능)

* 총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납부(5년간 거치 가능)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left[\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 매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기간>

세 목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8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times \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times \text{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left[\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right] \times \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times \text{연부연납 가산율}$$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13.3.1.~ '14.3.13.	'14.3.14.~ '15.3.5.	'15.3.6.~ '16.3.6.	'16.3.7.~ '17.3.14.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연 3.4%	연 2.9%	연 2.5%	연 1.8%	연 1.6%	연 1.8%	연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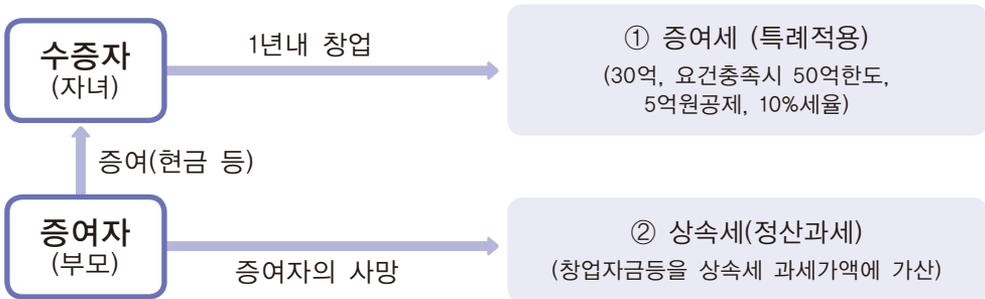
[해석사례]

-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의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포함됨 (징세46101-322, 1999.2.4.)
- 연부연납을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 재산을 포함하고 사전 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은 제외한 재산을 말함 (재산-3057, 2008.9.30.)
-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재산-1403, 2009.7.10.)
-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2152, 2009.8.12.)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음 (재산-651, 2009.11.6.)
-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재부 재산-1096, 2010.11.10.)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제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해석사례]

-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서면4팀-1393, 2007.4.30.)
-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4457, 2008.12.30.)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4455, 2008.12.3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60, 2014.09.22.)

3)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하는 경우
 -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18.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3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 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 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cdot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frac{\text{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10,000} \times \frac{3}{10,000}$$



[해석사례]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4팀-3162, 2006.9.14.)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4팀-3160, 2006.9.14.)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등(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 증가분 포함)은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4팀-2895, 2007.10.9.)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4팀-3430, 2007.11.28.)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재산-4457, 2008.12.30.)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361, 2011.7.2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적용됨 (기재부 재산-678, 2011.8.22.)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30(5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
	기타사항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5억원) × 10%(20%)
사후 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 · 불분명한금액 × 0.3%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 1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3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 · 폐업한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재차증여재산가산배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20.12.31.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가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1)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1)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 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 · 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 할증률 〉

구분	대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	
지분을 50% 이하	20% 할증	10% 할증	'20.12.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지분을 50% 초과	30% 할증	15% 할증	

4)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법인”이라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 이후 평가분부터)

-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05.1월부터 '20.12월말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해석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서일46014-10519, 2003.4.24.)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함 (서면4팀-2629, 2005.12.27.)
-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적용 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제외함 (서면4팀-3801, 2006.11.17.)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재부 재산-614, 2007.5.28.)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재산-38, 2011.1.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3. 20.>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자우편 주소	
	④ 주 소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⑩ 주 소			
	⑪ 상속원인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⑫ 상속개시일
세무대리인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리 번 호	
	⑯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⑰ 상속세과세가액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⑱ 상속 공 제 액			면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⑲ 감정평가수수료			⑳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⑳ 과 세 표 준 (⑰ - ⑱ - ⑲)		㉞ 신고불성실가산세	
㉑ 세 율		㉟ 납부불성실가산세	
㉒ 산 출 세 액		㊱ 납부할세액(합계액)(㉞+㉟+㉠+㉡+㉢+㉣)	
㉓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 · 신청 일자
㉔ 산출세액(㉒ + ㉓)		㉡ 연부연납	
㉕ 이자상당액		㉣ 물 납	
㉖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 분 납
	㉗ 계(㉒ + ㉓ + ㉔ + ㉕ + ㉖)		㉣ 신고납부
㉘ 증여 세액 공제	㉘ 소계(㉘ + 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㉚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㉛ 단기세액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㉜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㉝ 그 밖의 공제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⑧ 주민등록번호"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⑨ 거주구분"란 :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⑪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표시합니다.
5. "⑫ 상속개시일"란 : "⑪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⑬ 성명"부터 "⑯ 전화번호"란 : 세대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⑰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㉔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⑱ 상속공제액"란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㉔ 상속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㉑ 세율", "㉒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㉓ 세대생각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㉕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㉗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㉙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㉛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㉜ 납부불성실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㉝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㉞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㉟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㊱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인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개정 2019. 3. 20.>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⑨ 종 류	⑩ 소재지	⑪ 수 량(면적, 톤수)	⑫ 단 가	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⑭ 상 호	⑮ 사업자번호	⑯ 주식수	⑰ 1주당 가액 등	⑱ 가 액
계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		㉓ 영농상속 공제금액	
㉑ 기간별추징률		㉔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㉒ 금액(㉑ × ㉑)		㉕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㉖ 금액(㉓ × (㉔/㉕))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㉗ 상속세액	㉘ 상속세액

5.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㉙ 일 수	㉚ 일 수
㉛ 이 자 율	㉜ 이 자 율
㉝ 이자상당액 (㉙ × ㉛ × ㉚/365)	㉞ 이자상당액 (㉚ × ㉜ × ㉛/365)

6.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㉟ 납부할 세액(㉗ + ㉝)	㊱ 납부할 세액(㉘ + ㉞)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㉑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가목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	06

3. "㉒ 기간별추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추징률	100%	90%	80%	70%

4. "㉓ 및 ㉔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된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5. "㉕ 및 ㉖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㉗ 및 ㉘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0.>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업 종
사업장 소재지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상장일)	[] 상장(.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구 분	자산종류	금 액 (자산가액 - 담보채무액)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 지	
	건 축 물	
	기계장치	
	기 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 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기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다. 한도액 계산

⑧ 기업영위기간	⑨ 기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기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㉗~㉙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 "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수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소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여일자	
	⑪ 주소				⑫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리번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⑰ 재산구분 코드	⑱ 재 산 류	⑲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⑳ 소재지·법인명 등		㉑ 수 량 단 가	㉒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여 []부			
			[]여 []부			
			[]여 []부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㉔ 해당 증여재(부표 ⑰가액)	㉘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㉕ 가산 증여재(부표 ⑱가액)	㉙ 납부불성실가산세		
		㉖ 해당 증여재(부표 ⑱가액)	㉚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㉔ - ㉕ + ㉘ + ㉙)		
		㉗ 가산 증여재산(부표 ⑰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㉘ 합계(㉔ + ㉕) 또는 (㉖ + ㉗)	㉛ 연부연납		
㉚ 증여재산공제			현금	㉜ 분 납	
㉛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㉝ 신고납부		
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㉝ 과세표준 (㉚ - ㉛ - ㉜ - ㉝)			년 월 일		
㉞ 세 율 (10%, 20%)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㉟ 산출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액공제	㊱ 세액공제 합계(㉞ + ㊱)				
	㊲ 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세액공제	㊳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⑨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③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⑬ 성명"부터 "⑯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⑰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창업자금)	증여재산(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 "⑱ 재산종류"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⑲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 "㉑ 소재지·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㉔"부터 "㉗"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 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㉘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적용하되, ㉙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㉙의 금액을 적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⑬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⑬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㉚ 세율"란: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㉜ 분납"란: 납부할 금액(㉜ - 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㉞ 신고납부"란: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② 총자산가액		
	사업 무관 자산 가액	㉗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㉙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㉚ 과다보유현금	
		㉛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⑥ 가업자산 상당액 (① × ⑤)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⑧ 합계액 (⑥ + ⑦)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⑨ 총한도액 (100억원)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 ⑦)		
	⑪ 계 (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 < ⑨이면, (⑧ - ⑦)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⑬ 증여재산가액 (① - ⑫)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㉗~㉛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 "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㉔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15.3.13.>

주식등 특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증여자와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2. 증여자 및 기업승계 법인 현황

증 여 자 (기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기업법인 현황	
⑤ 성 명	()	⑪ 법 인 명	()
⑥ 주민등록번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주 소		⑬ 업 종	(업태) (종목)
⑧ 기업법인의 최대주주 여부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⑭ 개 업 일	
⑨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주식수(지분율)	총 주 (지분율 : %)	⑮ 발행주식총수	주
⑩ 기업영위기간	~	⑯ 중소기업 여부	[] 해 당 [] 해당하지 않음
		⑰ 상장여부(일자)	[] 상 장(. . .) [] 비상장

3. 기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⑱ 수증일	⑲ 수량	⑳ 수증 주식등 지분율	㉑ 단가	㉒ 주식 등 가액 (⑲×㉑)	㉓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기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기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⑧, ⑨, ⑬~⑰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㉒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 ㉓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㉒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중질지(80g/㎡(재활용품))]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본사항

수 증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증여자와의 관계		⑤ 전자우편주소	
증 여 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		

2. 신청내용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여재산 가액	⑫ 비 고

3. 사용내역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⑬ 수 증 일	⑭ 재산종류	⑮ 가 액	⑯ 사용일자	⑰ 사용용도 및 내역	⑱ 사용금액	⑲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임차보증금, 기계장치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예 :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⑲ 비교"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10mm×297mm[중질지(80g/㎡)(재활용품)]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구 분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⑤ 총납부세액				⑥ 최초 납부세액				⑦ 연부연납 대상 금액(⑤-⑥)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 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 회	12 회	13 회	14 회	15 회	16 회	17 회	18 회	19 회	20 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이 책자는 2019년 4월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책자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발행일자	2019년 5월
발행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감수	상속증여세과장 김길용
집필총괄	사무관 김광민
집필·편집	국세조사관 김현경
	국세조사관 김한석
	국세조사관 한재영

